

특별공급 (생애최초)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신설)</td> </tr> <tr>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td> </tr> <tr>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td> </tr> <tr> <td>우선공급 (35%)</td> <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td> </tr> <tr> <td>일반공급 (15%)</td> <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td> </tr> <tr> <td>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30%(추첨제)</td> <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초과(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자 중,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우선공급 (3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일반공급 (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30%(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초과(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자 중,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구분	내용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의 순서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우선공급 (3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일반공급 (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30%(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초과(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자 중,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원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 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및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소득구분	비율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4년 적용)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정적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서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정보제공을 하기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을 근거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